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수산생물방역기관과 수산생물검역기관을 일원화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발생과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생물전염병 방역 관련 업무의 주체를 기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있던 수산생물방역에 관한 사항 등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

- 1) 국가 수산생물방역기관과 수산생물검역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수산생물질병발생시 효율적인 대응 곤란
- 2)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국가기관과 국가 수산생물방역기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관련된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는 등 방역 및 검역업무 추진 기관을 일원화 함
- 3) 국가 수산생물방역기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검역업무를 일원화하여 수산질병이 발생한 때, 확산 방지 등 효율적인 대응이 기대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항 및 제4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정되고,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지정검역물에 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인근 수산생물 양식시설에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을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신청인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립수산과학원)”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

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립수산과학원”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령한 행정규칙은 개정규정에 따라 발령된 것으로 한다.

② 이 규칙 시행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증 및 제27호 서식에 따라 발급된 수산생물검역관증은 개정된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7호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수산과학원

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제7호 및 제8호 본문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전단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0조의2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

다.

제13조의4제1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3조의5제1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제4항,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제7항,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0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및 제6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

리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제2호나목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6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26조의3제2항 및 제5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2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26조의5제1항, 제4항 및 제5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 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국립수산과학원”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43조제3항제9호 단서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45조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

원장”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단서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전단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51조의3제2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본문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57조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표 6의4 제4호바목2)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나목 및 다목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

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바목 단서 중 “수산과학원장”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표 제2호 전단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및 라목 중 “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산물전염병의 예찰) ① <u>국립수산물과학원장</u> 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 로 수립·시행하고 신속한 방역 업무를 위하여 수산물전염병 에 대한 예찰(豫察)을 할 수 있 다.	제5조(수산물전염병의 예찰) ①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 ----- ----- ----- ----- --.
② <u>국립수산물과학원장</u> 이 제1항 에 따른 예찰을 할 때에는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수산물 관련단체, 수산물 관련 기업 의 대표 및 수산물전염병방역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 다.	②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 ----- ----- ----- ----- ----- --.
③ <u>국립수산물과학원장</u> 은 수산물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등에 대하여 방역에 필요 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 ----- ----- ----- ----- ----- -----.
④ 수산물전염병에 관한 예찰 및 방역의 실시요령, 수산물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지 사 등에 대한 경비 지원 등에	④ ----- ----- ----- -----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수산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산물방역관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역학조사)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14조의2에 따른 수산물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며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② 역학조사반원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4. (생략)

③·④ (생략)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제10조(수산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제15조(역학조사)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1. ~ 4. (현행과 같음)

②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에 따른 역학조사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산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① 국립수산물과학원장, 시·도지사 및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수산물양식시설을 검사하거나 수산물양식자에게 투약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검사 또는 투약 당일에 공고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 국립수산물과학원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

제16조(수산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양식자에게 투약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하 “병성감정실시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투약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투약을 할 때 필요한 비용 및 약품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병성감정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7조(검사등증명서의 휴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또는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생물용 의약품 투약사실 증명서를 휴대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시행일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

-----.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검사등증명서의 휴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시행일 당일에 공고할 수 있
다.

1. ~ 5. (생 략)

제18조(수산물생물의 격리·이동제
한 등의 절차) ①·② (생 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차단·
입식제한 또는 소독 등 수산물
물방역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물
물방역을 위한 방역 지원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
산물품질관리원장은 방역업무에 필요
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
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방류수산물생물의 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염
여부의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
산물생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면 품종: 전복, 넙치, 감성
돔, 자주복, 해삼, 참가리비, 조
피볼락, 황복과 그 밖에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

--.

1. ~ 5. (현행과 같음)

제18조(수산물생물의 격리·이동제
한 등의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

-----.

제22조(방류수산물생물의 검사 등)

① -----

--.

1. -----

-----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장-----

하는 품종

2. 내수면 품종: 참게, 잉어, 동
자개, 붕어, 메기, 쏘가리, 꺾
지, 뱀장어, 자라와 그 밖에 국
립수산물과학원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품종

②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
염병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방류수산생
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검사시
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과학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
수산물과학원장은 방류수산생물
의 전염병 검사를 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
염병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검사 등에 필요
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과학원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 ② (생 략)
③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나 시·
도지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

2. -----

----- 국
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② -----

----- 국립수산물품
질관리원장 ----- 국립수
산물품질관리원장 -----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국립수산물품
질관리원장-----.

제23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의 부여·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생물관련단체로부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와 관련하여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사실의 확인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시설을 지정하려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국립수산물관리원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지정검역물에 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인근 수산생물 양식시설에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 5. (생략)

② ~ ⑥ (생략)

제40조(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

[illegible]

제35조(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신청 등) ① -----

-----.

인정되는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

용제한) ① (생 략)

②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산생물용의약품 사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시·도지사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수산물과학원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제43조(명예수산물방역감시원의 위촉) ① 국립수산물과학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8조에 따라 명예수산물방역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6. (생 략)

용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제41조(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

1. ~ 6. (현행과 같음)

제43조(명예수산물방역감시원의 위촉)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1. ~ 6. (현행과 같음)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그 밖에 수산생물방역과 관련하여 <u>국립수산물과학원장</u>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u>국립수산물과학원장</u>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감시원에게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생략) 제45조(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 ①·② (생략) ③ <u>국립수산물과학원장</u>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를 하는 경우와 범칙금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영수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u> <u>장</u> ----- ----- ③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 ----- ----- ----- ----- -----.
---	---